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
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고속도로 등 다수 시·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982호, 2024. 1. 9. 공포, 2024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세부절차 등(안 제5조)

-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수 시·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,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가능토록 규정

나. 공동 신청 시범운행지구의 변경·해제(안 제6조)

- 다수 시·도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변경·해제 필요 시에도 관할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토록 규정

다.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등 위임 또는 위탁(안 제36조)

-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단”을 “전단 및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조제2항”을 “법 제7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직접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조제1항 단서”를 “법 제7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의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

사가 공동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조제2항”을 “법 제7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5조제4항”을 “제5조제5항”으로 한다.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”을 “법 제9조제2항, 제3항 또는 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 제9조제3항”을 각각 “법 제9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법 제9조제2항”을 “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,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시·도지사”를 각각 “시·도지사 및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”로 한다.

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율주행과”를 “자율주행, 도로관리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,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)	제5조(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)
① 시·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 범운행지구(이하 “시범운행지 구”라 한다)의 지정을 신청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 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.	① -----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시범운행지 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은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범
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
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
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
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
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
· 방법 · 절차 및 그 밖에 필요
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
다.

제6조(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
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
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시범운행
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
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따른

⑤ 법 제7조제5항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 제5항-----

--.

제6조(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
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7조제4항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
지정을 해제해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관할 시·도지사가 시범운행
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
를 신청하는 경우

4. (생략)

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범
운행지구의 지정 변경·해제의
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항(지
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
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
제1호의 사항만 해당한다)

제8조(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
례)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
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
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경우(법 제7조제2
항에 따라 공동으로 지정을
신청한 시범운행지구의 경우
에는 관할 시·도지사가 공동
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
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

4.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7조제5항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5조제5항 -----

제8조(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
례) ① 법 제9조제2항, 제3항 또
는 제5항-----

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해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) ① 시범운행지구를 관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9조제5항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 법 제9조제5항-----

-----.

⑤ -----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-----
----- 제5항-----

--.

제14조(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) ① -----

1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2. · 3.</u> (생략) ③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<u>2.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</u> <u>된 시범은행지구의 운영계획</u> <u>수립 및 운영, 성과보고서 작</u> <u>성에 관한 업무</u> <u>3. · 4.</u>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	
연 락 처	010 - 2564 - 2311